

다.

- 해악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 육체적 정신적 침해를 방지해야 하는 과제를 부담한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작업위탁자는 교정당국, 민간기업의 기업인, 민간인 그리고 州의 공무원 등이다.

2. 作業의 種類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작업에는 보통은 단순한 것이 주가 되나, 부분적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州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양질, 고급의 수공업인 경우도 있고(직영작업), 나아가 사기업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외부위탁운영).

직영작업으로 실시되는 작업에는 주로 교도소 자체수요에 충당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관공서에 가구, 서식용지나 인쇄물을 공급하기도 한다. 대체로 이돌 직종에는 제빵공, 도축사, 목공/가구공, 철물공, 배관공, 제화공, 재단사, 도색공, 미장공, 인쇄공/식자공, 제본공, 세탁공 등의 수공업직이 포함된다. 농장운영은 아주 소규모로만 운영되고 있다.

사기업체와 제휴한 전형적인 위탁작업은 통상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부분조립이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好景氣에 합리화 및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기업가로부터 교도소 당국에 의뢰된다. 따라서 사기업체와 제휴하는 교도작업의 작업상황은 대체로 景氣에 달려있다. 不景氣에는 교도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1994 : 48.6%)

현재 성인 남자교도소의 교도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약 55%는 위탁작업
- 약 45%는 직영작업

3. 作業報酬

국가가 재소자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재소자들의 끊임 없는 비난은 실제로 지불되는 보수 (행형비용은 논외로 하고)와 관련지어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임금률에 상응한 보수체계의 도입에 대해서는 행형비용을 이유로 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입법조치도 없다. 작업보수 및 교육비보조에 관한 법규정은 헛센주의 경우 작업에 참여하는 재소자에게는 과거의 작업보수체계의 비교하여, 기본급여에 대한 현존하는 권리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감지될만한 개선조치도 없었다. 현재 재소자의 작업일당은 평균 10.33DM이다(작업성적에 따른 보너스포함).

作業報酬(基本給) 1995

보수등급	일 당
I (75%)	7.31DM
II (88%)	8.57DM
III (100%)	9.74DM
IV (112%)	10.91DM
V (125%)	12.18DM

여기에는 작업성적에 따른 보너스가 기본급의 최고 30%까지 추가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교도작업은 재정수요충당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간의 경쟁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도 작업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도 실시된다.

- 위탁작업을 하는 재소자의 작업성적에 대하여 시설외부의 자유노동자의 임금률 또는 당해 지역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하고, 교도작업의 특수성도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직영작업의 대상 및 작업성적을 위하여 가격이 계산되고 그 가격은 자유시장에서의 그것과 근접해야 한다.

교도소의 교도작업행정에 있어서는 재소자의 작업 및 직업교육부서(Organisation der Arbeit und der beruflichen Bildung)가 이를 총괄한다. 이는 교도소의 전문부서로서 課의 업무영역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4. 矯導作業行政의 業務領域

직업훈련지원	직업훈련
	- 견습
	- 직종전환교육(Umschulung)
	직업훈련 추가 및 재교육
- 지원교과과정, CNC코스	
- 용접공과정	
노동치료	
- 노동교육적(arbeitspädagogisch) 지원프로그램	

생산	대량생산 및 특수작업
	- 자체운영의 다양한 제품생산 - 수공업
통합	위탁에 의한 조립 및 포장작업
	- 사기업위탁운영 - 사기업을 위한 노동력의 공급
직영작업	무계호 외부통근
	- 시설 외부의 사기업체에 노동력의 취업
	교도소 자체의 직영작업
	- 급양, 피복, 세탁
	- 건축 및 건축정비작업

1995. 3. 31 당시 헷센주의 교도소에는 모두 2,512명 수용의 자체, 보조 및 위탁경영 그리고 노동치료적 작업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矯導作業統計 (1995. 3. 31) (단위 : 名 또는 席)

교정시설	자체운영		보조운영		위탁운영		노동치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Butzbach	92	75	119	114	230	172	0	0
Darmstadt	70	46	104	75	100	81	5	0
Dieburg	11	13	47	45	120	81	0	0
Frankfurt I	0	0	124	121	93	52	24	18
Frankfurt II	0	0	30	28	18	15	12	12
Frankfurt III	60	38	50	45	20	16	6	6
Frankfurt IV	0	0	144	129	0	0	0	0
Fulda	0	0	13	12	15	12	10	0
Gießen	0	0	26	22	45	18	0	0
Kassel I u. II	97	64	159	130	80	50	22	19
Limburg	0	0	11	9	53	38	0	0
Rockenberg	0	0	19	19	35	22	0	0

교정시설	자체운영		보조운영		위탁운영		노동치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Schwalmstadt	52	42	52	53	138	38	6	6
Wiesbaden	32	16	74	33	26	23	53	36
JAA Kaufungen	0	0	0	0	15	3	0	0
합 계	414	294	972	835	988	621	138	97

業務領域에 따른 比率(1994) (단위 : %)

생산	34
직영작업	31
직업 및 교과교육	23
무계호 외부통근	12

5. 向後展望

교도작업은 오늘날 사회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의미는 사회적인 활용 가능성에 기인한다. 교도소에서 교도작업의 활용형태로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지향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재소자가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이로 인하여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점에서 행형목표달성을 위한 본질적인 처우프로그램으로서의 교도작업에 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재소자의 교도작업에 대한 규칙적인 참여는 시설 내에서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교정의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분위기에 대한 교도작업의 의미는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현존하는 교도작업의 활용형태 특히 이른바 사기업체의 위탁작업은 교육받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주로 공업분야의 생산활동에서만 일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부정적인 사회화작용 그리고 때로는 재소자의 직업적인 그리고 사회통합에 있어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교도작업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LHO 제26조에 따른 州가 운영하는 교도작업본질의 전환
- 문제재소자를 위한 사기업체의 위탁에 의한 지나치게 단순하고 부분적인 작업을 지양하고 보다 적절한 작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
- 가능한 한 고도의 기술수준 특히 공업기술분야에서의 고급기술 나아가 서비스형태의 직영작업의 구축 및 확대
- 폐쇄교도소에서의 위탁작업관계 그리고 취업자조합 등을 통한 교도작업에 대한 작업성적에 상응한 보수
- 창조적인 작업장에 특별히 능력 있는 재소자의 작업투입
- 공간적 기술적 관점에서의 공장건설 및 현존하는 공장의 확장
- 취업자조합의 결성

XI. 特殊處遇프로그램

1. 外國人在所者處遇

헛센주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비율은 지난 수년동안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7년만 하더라도 27%를 차지했었는데 1995년에는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미결구금시설의 외국인수용자비율은 70%를 넘어섰다. 외국인재소자들은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현저한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한 결과로 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부의 외국인상담기관의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독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시키는 조치가 불가결하게 된다.

헛센주 교정시설에서 외국인재소자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자료들은 1982년부터 1983, 1984 및 1986년도에는 중단 매년 3월 31일을 기하여 수집되고 있다. 왜냐하면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행형통계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얻어진 자료 및 조사연구결과는 외부상담자를 통한 외국인재소자의 상담과 처우에 나아가 전반적인 행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근거자료가 된다.

全體收容人員中 外國人比率 (단위 : 명, %)

기준일	전체 재소자수	외국인 재소자수	외국인 재소자 백분비
1982. 7. 1.	5,516	1,544	28.00
1985. 3. 31.	5,364	1,364	25.40
1987. 3. 31.	4,718	1,273	27.00
1988. 3. 31.	4,637	1,366	29.50
1989. 3. 31.	4,791	1,427	29.80
1990. 3. 31.	4,813	1,539	32.00
1991. 3. 31.	4,735	1,766	37.30
1992. 3. 31.	5,150	1,995	38.70
1993. 3. 31.	5,262	2,103	40.00
1994. 3. 31.	5,301	2,454	46.30
1995. 3. 31.	5,254	2,503	47.80

全體未決拘禁者中 外國人比率 (단위 : 명, %)

기준일	전체 미결구금자수	외국인 미결구금자수	외국인 미결구금자 백분비
1985. 3. 31.	1,329	614	46.20
1987. 3. 31.	1,168	584	50.00
1988. 3. 31.	1,285	672	54.00
1989. 3. 31.	1,369	743	54.30
1990. 3. 31.	1,486	810	54.50
1991. 3. 31.	1,620	1,015	62.70
1992. 3. 31.	1,831	1,146	62.60
1993. 3. 31.	1,945	1,153	60.00
1994. 3. 31.	1,883	1,294	68.70
1995. 3. 31.	1,783	1,282	71.90

헛센주 소년교도소의 외국인재소자비율은 1988년까지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성인교도소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1988. 3. 31. 기준일로 록켄베르크 24.4%, 비스바덴 20.7%). 그러나 1989. 3. 31.의 조사 이후 양 시설에서의 외국인재소자는 괄목할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少年矯導所의 外國人在所者比率 (단위 : 명, ()안은 %)

기준일	JVA Rockenberg 외국인재소자	JVA Wiesbaden 외국인재소자
1985. 3. 31.	41 (14.4)	32 (16.9)
1987. 3. 31.	40 (14.9)	38 (22.4)
1988. 3. 31.	44 (24.4)	43 (20.7)
1989. 3. 31.	50 (31.1)	61 (28.5)
1990. 3. 31.	60 (43.1)	66 (30.8)
1991. 3. 31.	82 (50.0)	70 (36.5)
1992. 3. 31.	89 (48.4)	91 (40.8)
1993. 3. 31.	88 (46.8)	94 (42.0)
1994. 3. 31.	101 (52.1)	187 (60.1)
1995. 3. 31.	95 (48.2)	201 (64.2)

인제나처럼 특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시설에 평균 이상으로 많은 외국인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1995. 3. 31. 당시 헛센주 전체 시설에 수용된 외국국적의 재소자는 2,503명 이었는데 이 중 863명(1994년에는 894명)이 프랑크푸르트 제1, 제2, 제3, 제4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이는 전체 외국인 재소자의 3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1994년은 36.4%)

프랑크푸르트의 矯正施設에 收容된 外國人在所者

(단위 : 명, ()안은 %)

기준일	Fankfurt I	Fankfurt II	Fankfurt III
1985. 3. 31.	413 (60.5)	65 (43.0)	76 (35.7)
1987. 3. 31.	355 (62.3)	60 (44.4)	88 (43.1)
1988. 3. 31.	419 (67.0)	79 (59.4)	84 (45.2)
1989. 3. 31.	438 (61.9)	94 (70.7)	69 (34.7)
1990. 3. 31.	501 (67.2)	54 (43.5)	82 (39.6)
1991. 3. 31.	533 (77.5)	102 (56.0)	93 (43.0)
1992. 3. 31.	556 (73.4)	138 (69.7)	129 (57.3)
1993. 3. 31.	554 (71.5)	129 (70.1)	121 (56.3)
1994. 3. 31.	591 (77.6)	123 (72.8)	97 (58.4)
1995. 3. 31.	546 (79.9)	104 (70.7)	92 (47.4)

프랑크푸르트 제4교도소(개방교도소)에는 1995. 3. 31. 당시 94명(1994년에는 83명)의 외국인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다(전체에 대한 외국인비율은 19.7%, 1994년에는 20.0%)

과거와 마찬가지로 1995. 3. 31. 당시 외국인재소자 2,503명 중 터어키국적의 외국인이 495명(19.7%)으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였다. 기타 대표적인 외국인재소자는 국적 및 지역별로 다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國籍別 外國人在所者(1995)

국 적 별	재소자수	백분비(%)
터어키	495	19.70
구 유고연방	339	13.50
모로코	274	10.90
알제리아	241	9.70
중남미 국가	231	9.20
기타 아프리카 국가	141	5.60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특히 헛센남부지역의 시설에 외국인 재소자를 위한 특별상담이 필요함이 분명해졌다. 1996. 3. 31. 당시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에는 60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546명의 외국인 재소자가 수용중이었다. 이 교도소에 투입된 외래의 외국인재소자 상담원(현재 2인의 상근, 2인의 비상근직)들은 과중한 업무량에 혹사당하고 있다. 현재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재소자를 위한 독일어수입에 집중 노력하고 있다. 1994/95회계년도 헛센주 교도소에서의 외래의 외국인재소자 상담을 위해 1,010,000DM가 계상됨으로써 다시 획기적인 진전을 보았다.

外國國籍 在所者를 위한 支援

(단위 : DM)

고유번호	지 원 내 역	1993	1994	1995
427 77	직무외적 및 부업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활동수당 및 제반경비	110,000	240,000	240,000
512 77	서적, 잡지류	60,000	60,000	60,000
538 77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에서의 제반경비	657,000	690,000	690,000
547 77	행정상의 소액지출	23,000	20,000	20,000
ATG 77		850,000	1,010,000	1,010,000

헷센주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래의 외국인재소자를 위한 상담원들은 특별한 관점에서 그들의 지원 및 상담업무를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

- 외국인재소자들이 현재 처해있는 생활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석방후의 생활을 위해서도 그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늘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원조)

- 외국인재소자와 그 가족들의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를 지켜주고, 관계당국이나 각종 기관들과 접촉하여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특히 동료재소자나 교정직원들과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른 식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고유의 인간성 및 문화적 관습을 이해시킨다.

- 일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하게 전문화된 원조프로그램을 외국인재소자들도 원활하게 이용토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외래의 외국인재소자상담은 언제나 당해 지역의 이들 기관의 활동계획과 실무상의 사회복지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 교도소의 사회복지요원 기타 교정직원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2. 藥物中毒者相談

헷센주 교도소의 70년대말부터 개설된 외래의 약물중독상담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 교도소 및 감호소의 개방시설에서의 입원처우를 위한 자리의 연결

- 부분입원시설, 통원의 원호 및 처우/치료 그리고 자조시설 등에서의 연결

- 상담 및 동기부여활동(특히 보충적인 처우의 경우), 치료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하는 감성훈련

- 치료시설에의 이송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약물중독의 위험이 있는 대다수 재소자들에 대한 예방활동

-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상담소에서의 여자 약물중독자에 대한 추수상담(휴가기간중 또는 석방후)

外來의 藥物中毒者相談實績 (단위 : 명, ()안은 %)

연도	장기치료 재소자수 합 계	장기치료, 추수적 보호시설, 통원 치료 등과 연결	석방/이송	상담중단	상담계속
1980	416	105 (25.0)	60 (14.0)	110 (27.0)	141 (34.0)
1981	536	147 (28.0)	101 (19.0)	104 (19.0)	184 (34.0)
1982	738	209 (28.0)	150 (20.0)	181 (25.0)	198 (27.0)
1983	981	260 (26.5)	237 (24.2)	259 (26.4)	225 (29.9)
1984	1,076	321 (29.6)	260 (24.2)	261 (24.3)	234 (21.7)
1986	1,304	355 (27.2)	301 (23.1)	280 (21.5)	275 (21.1)
1987	1,447	420 (29.0)	340 (23.5)	277 (19.1)	357 (24.7)
1988	1,623	459 (28.3)	502 (30.9)	284 (17.5)	378 (23.3)
1989	1,528	439 (28.7)	435 (28.5)	262 (17.1)	392 (25.7)
1990	1,592	458 (28.8)	484 (30.4)	313 (19.7)	337 (21.1)
1991	1,626	428 (26.3)	624 (38.4)	177 (10.9)	397 (24.4)
1992	1,622	457 (28.2)	474 (29.2)	313 (19.3)	378 (23.3)
1994	1,538	456 (29.6)	418 (27.2)	265 (17.2)	399 (26.0)

年度別 藥物中毒者 處遇豫算 (단위 : DM)

연도	금액	연도	금액
1978	100,000	1987	1,100,000
1979	200,000	1988	1,150,000
1980	500,000	1989	1,222,800
1981	800,000	1990	1,395,000
1982	800,000	1991	1,425,000
1983	800,000	1992	1,623,000
1984	1,000,000	1993	1,801,000
1985	1,000,000	1994	1,855,000
1986	1,000,000	1995	1,891,000

3. AIDS感染者處遇

에이즈는 교정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지만, 교도소와 감독관청은 특별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1985년부터 포괄적인 의료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처우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HIV감염자의 수치가 가장 낮은 해는 1993년으로, 당시 감염자는 모두 69명(조사대상자의 1.5%)에 달했다.

年度別 에이즈感染檢査結果 (단위 : 명, ()안은 %)

기준일	전체 재소자수	수검인원	에이즈양성반응재소자
1985. 12. 31.	4,894	3,922(80.10)	100(2.50)
1986. 12. 31.	4,595	4,257(92.60)	120(2.80)
1987. 12. 31.	4,726	4,451(94.20)	115(2.60)
1988. 11. 30.	4,805	4,518(94.00)	117(2.60)
1989. 12. 31.	4,749	4,459(93.90)	105(2.40)
1990. 12. 31.	4,933	4,542(92.10)	102(2.20)
1991. 12. 31.	4,865	4,519(92.90)	89(2.00)
1992. 12. 31.	4,976	4,532(91.10)	70(1.50)
1993. 12. 31.	5,290	4,711(89.00)	69(1.50)
1994. 12. 31.	5,042	4,583(90.90)	70(1.50)

의료적인 처우과정에서 모든 HIV감염재소자는 낱알의 기왕증조사 및 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외래의 특별 통원에 의한 표준검사 및 통제검사 등을 포함하는 보다 정밀한 진단기회가 제공된다. 교도소의 담당 직원은 물론 헷센주 법무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외부기관(예컨대 AIDS-Hilfen, Caritasverband Frankfurt)에 소속된 전문가에 의한 사회심리적 처우가 실시된다.

4. 헷센州의 社會治療

카셀 제2교도소(사회치료시설)는 1980. 7. 1. 개소되었다. 1987년에 제2단계공사가 마무리되어 운영되면서 폐쇄시설에 140석 그리고 외부통근자를 위한 25석이 추가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 시설이 독일 최대규모의 것이다.

행형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중하거나 상습적인 범죄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재범이 우려되는 성인 남자가 이에 수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재소자도 사회치료를 위해서 강제이송되는 않는다. 입소는 재소자가 신청을 해야 하고, 자유상태에서 범죄를 벌리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처우에 협력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특별한 처우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는 입소될 수 없다. 사회치료에 있어서 범죄는 적절한 사회적인 행동양식이 학습되지 않아서 성숙한 成人으로서의 인성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이해된다.

수용자는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주거그룹의 형태로 생활하

며, 두개의 주거그룹이 하나의 구역을 이룬다. 한 구역에는 두명의 사회복지사, 한명의 심리치료사 그리고 보안을 위한 일반교정직원들이 각각 배속되어 있다. 공동체생활의 본질적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주거그룹에서 재소자들은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요한다. 충분한 인성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모든 개별 재소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처우경과를 정한 정기적으로 계속 작성되어야 하는 교정계획이 만들어진다.

치료적인 개별 및 그룹차원의 조치들이 사회치료적 처우의 핵심을 이룬다. 범죄를 멀리하는 인성의 계속적 발달에 대한 조망을 하기 위해서 치료적인 개별상담시 범죄성의 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점에서 당해 재소자의 성장이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행해진다.

치료그룹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다양하게 전문화된 프로그램(자기경험그룹 및 대응그룹, 역할극과 신체지향적 치료그룹 등)에서 자기 자신과 사회생활상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자기경험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위한 기초를 습득하고 자기를 실현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등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사람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의 체험 등이 다루어진다.

재소자에게 의무지워진 교도작업, 학과교육 그리고 직업훈련은 석방후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 및 생활능력상의 결핍을 해소하고 재소자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수준에 상응하

는 직업상의 자질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조 및 지원과정상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을 돕는다.

현재 이 사회치료시설에는 교육훈련 및 직종전환교육을 위한 100석 이상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 여기에는 햇센주 전역에서 이송되어온 자들에 대하여 도장공, 페인트공, 에너지 전자공, 용접공, 목공, 금속공 등의 교육이 행해진다. 자유시간을 위해서도 사회치료시설은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재소자들은 행형완화조치의 대상자를 위한 수일간의 카누 및 노르딕스키프로젝트가 정점을 이루는 다양한 스포츠(구기, 체력단련, 장거리달리기, 체조)를 즐길 수도 있다. 취미반에서는 공작, 사진, 음악, 요리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수용자가 충분히 그의 인성에 있어서 안정을 회복하였고 석방이 임박하면 교정은 대외적으로 완화된 다. 우선 교정직원이 계호하는 외출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독립적인 완화조치 나아가 수일간의 외부휴가가 부여된다.

5. 母子舍棟

프랑크푸르트 제3교도소에 1975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母子舍棟(Mutter-Kind-Heim)은 행형법 제142조에 따른 시설로서, 1988년부터는 개방 및 폐쇄시설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자녀가 아직 취학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우 모친이 자유형이나 소년형을 선고받거나 미결구금이 명해진 경우에 이용된다. 그 법적인 근거는 행형법 제80조이다. 모자사동은 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제79조 및 제79조의 범위내에서 햇센주소년국의 감독을 받는다.

모친은 주간에는 시설안의 직영작업에 종사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무계호외부통근자로서 시설 외부의 직장에 취업한다. 수용된 모든 어린이는 모친의 작업시간 동안에는 개방시설의 어린이그룹에서 유아교사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모든 어린이의 입소전에는 모자가 함께 수용되는 것이 어린이의 복지에 현실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모친이 폐쇄시설에 수용된 경우의 어린이의 생활환경은 현저히 제한되므로 어린이가 3년 이상이 되면 다른 양육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교도소수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청소년국의 결정에 따라 수용계속여부가 결정된다. 대다수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프로잉에스하임 어린이집(Verein Kinderheim Preungesheim e. V.)이 이를 담당, 지원 및 보호한다.

II. 自由時間, 體育, 文化生活

1. 概說

재소자들은 그들의 입소전에 자유시간중의 활동을 책임 있게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인이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소자들에게는 행형법 제67조에 따라 자유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수업, 방송원격수업, 재교육의 교과과정 및 기타 학습활동, 자유시간그룹, 집단대화 및 스포츠행사에 참여하거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자유시간프로그램이 재소자들에게 열려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독서, 라

디오 청취, 텔레비전시청 등으로 이 시간을 활용한다. 교도소 도서관에는 주로 독일어나 외래어로 된 대중문학서적이 비치되어 있으나, 전공서적도 문의하면 상당량 참조할 수 있다.

자유시간에 교육학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보다 더 심도있게 실시했더라면 환영받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공간적 제약과 더불어 예산부족도 장애요소가 되었다. 자원봉사자 및 상근직원, 재소자원호단체 기타 협회 특히 사회교육원 등의 활동에 의하여 재소자들의 자체주도 및 공동작업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2. 스포츠

교정시설에서 스포츠활동을 결성하여 이에 집중하는 것은 헷센주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경우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이 시도된다. 소년 체육시설의 설비를 시작으로 하여 스포츠복장과 각종 도구의 충분한 구비, 일반 교정 직원에 대하여 스포츠훈련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 나아가 스포츠교육학적인(sportpädagogisch) 프로젝트의 실시 등 다양하다.

특히 범죄인의 사회재통합에 있어서 일반공중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노력은 헷센주체육연맹, 헷센주소년체육, 독일체육연맹, 독일소년체육, 축구나 핸드볼, 탁구 등에 있어서 헷센주전문가협회 등과 같은 각종 스포츠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진다.

스포츠단체들과의 협력 (특히 헷센주청소년체육(Hessische

Sportjugend))으로 인하여 헷센주 체육연맹과 법무부에서 8명이 위촉되어 정규 구성원이 되는 "체육과 교정(Sport und Justizvollzug)"이라는 연구모임이 1979. 5. 21에 결성되기도 했다. 이 연구모임은 스포츠문제에 관하여 교도소의 자문에 응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된 목표가 구체화되고 새로운 구상이 다듬어짐으로써 교정시설의 다양한 활동들이 조정될 수 있다.

헷센주 교정시설에 현존하는 체육시설과 각종 체육프로그램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다름슈타트, 카셀, 록켄베르크, 슈발름슈타트, 비스바덴 등의 교도소에는 재소자체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정직원 그리고 외부의 스포츠단체도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을 구비하고 있다.

개별 교도소에서 스포츠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무엇보다도 일반 교정직원인 스포츠훈련교사들이 참여한다. 1974년 이래로 일반 교정직의 92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헷센주스포츠연맹 산하 체육학과의 특별 스포츠훈련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밖에도 10명의 체육교사가 교정시설의 스포츠 및 재소자들의 체육지도에 참여하고 있다.

교도소스포츠 제1호인 탁구 이외에도 헷센주 교정시설에서는 단체 종목인 축구, 핸드볼, 배구, 농구, 주먹볼(밧줄을 높이 치고 그 너머로 공을 주먹으로 때리는 배구와 비슷한 구기), 하키, 피구등의 게임이 행해진다.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은 장거리달리기, 서킷트레이닝, 체조, 보디빌딩 등과 같은 체력단련운동을 들 수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

는 육상종목 스포츠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획되어 있다. 최근에는 중량경기종목(역도, 레슬링, 권투)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원이 헷센주체육연맹에 속하고 재소자, 교정직원, 외부회원 등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단체가 6개의 교정시설에 현재 결성되어 있다.

3. 演劇 및 音樂活動

1973년에서 1994년말까지는 '프랑크푸르트 사회교육연맹(Frankfurter Bundes Fur Volksbildung GmbH)'의 활동의 하나로서, 다시 1995. 1. 1부터는 '사단법인 헷센보호관찰지원(Forderung der Bewahrungshilfe in Hessen e. V.)'에 의하여 계속된 '창살뒤편의 연극(Theater hinter Gittern)'이 각종 교정시설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극과 음악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공연은 매달 (여름은 제외) 부츠박흐, 다름슈타트, 디부르크, 프랑크푸르트구치소, 록켄베르크, 바스바덴 등의 교정시설에서 그리고 간헐적으로 카셀교도소와 카우퐁엔 및 겔른하우젠의 소년구급시설에서 개최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다름슈타트, 카셀,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 등지의 국립극장과 같은 대규모 무대에도 올려진 바 있다. 보다 자주 공연되는 것은 자유로운 민간의 대안적인 연극그룹이나 소규모예술활동 나아가 경음악 등이다. 외국인 수형자들에게는 요술이나 판토마임과 같은 것이 특별한 인기를 끈다. 이들에 대한 謝禮는 단지 행사준비에 소요되는 실비만이 지급된다. 이들 프로젝트는 프랑크푸르트시와 헷센주법무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때로는 재소자 자신들도 그들이 직접 대본을 써서 연극작품을 공연하기도 한다. 작품은 우선 오락이나 동료재소자들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소자연극그룹은 시설의 부에도 출연하며 이때에는 공공성 있는 작품으로 채워진다. 각각의 재소자들, 능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경험에 상응하게 개별교도소에서 음악그룹이 교육되고, 종종 예배에 같이 참여하기도 한다.

4. 文藝班, 白日場, 演劇워크샵

작문은 재소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이력과의 대비를 시도할 용기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시도의 시범적인 예로서 1980년부터 디부르크교도소에서 운영되는 문예반 문학워크샵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재소자백일장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매주 회합하는 글 쓰는 재소자를 위한 문예반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작업의 장점은 주말행사로써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학워크샵이며, 이때 손님들(많은 경우 작가들)이 초대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이러한 모임으로부터 이미 문학작품이 공간되기도 하였다. 문학작품 경진대회에는(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서 행해지는데) 개별 재소자가 참여하여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문학 및 연극스튜디오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소자들은 적극적으로 집필하고 연기할 수 있으며, 확실

하게 체험한 범죄경력을(우선은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역할교대(Rollentausch)'를 훈련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헷센주 작가연맹의 지원을 받는다.

5. 藝術創作活動

스포츠와 함께 재소자의 자유시간활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수공예창작코스를 들 수 있다. 다양하게 종종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코스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있다. 도자기, 장신구, 목공, 금속공, 기타 공예, 뜨개질, 코바늘뜨개질, 장난감제작, 象嵌細工, 素描, 사진, 경우에 따라서는 모형제작이나 유리뒤틀그림.

만들어진 작품들은 대부분 전시되고 바자회 등에서 판매된다. 교정시설 내외의 성탄절바자회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품판매행사는(헷센주의 날(Hessentag)과 같은 경우) 행형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판매수익금은 다시 원료구매를 위해 사용된다. 한가지 예로서 프랑크푸르트 제3교도소(여자교도소)의 사진코스를 들 수 있다. 거기서 만들어진 사진작품은 프랑크푸르트 사회교육원과 미술관에서 전시될 수 있다. 전시회장에서는 대개 교정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벌어진다.

"監獄안의 藝術(Kunst im Knast)"

10여년 전부터 부츠박호교도소에는 정기적으로 예술교육코스(kunstpädagogische Kurse)가 개설된다. 이를 위하여는 한명의 상근 여교사, 한명의 사회교육사 그리고 활동중인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소묘, 도자기, 인물조각,

그래픽, 유화, 석조 및 목조, 사진, 트릭필름, 비디오 등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이 코스는 8 내지 12명의 재소자와 적어도 두명의 프로젝트담당으로 구성된 하나의 지원그룹으로 이루어진다. 코스는 매주 1회 3시간씩 진행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2주간의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되기도 한다. 매 코스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하여 매주 1회 모든 프로젝트참가자는 이 작업을 기획, 평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대학과의 동반 세미나에 참가한다. 그밖에도 참가자 상호간에 작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며 비판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스기간의 시작과 끝무렵에 모든 그룹의 참가자와 진행자들이 작업장에서 회합한다. 재소자들은 이들 코스에의 참가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한다. 사전지식이나 예술적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규칙적인 참여가 요망된다고 한다.

예술교육코스실시의 의도는 재소자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예술적 능력의 실현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적으로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섬세한 표현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 경우 광범위하게 전문화된 실무프로그램은 재소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가능성 그리고 조건들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코스는 주제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정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주체적인 보상필요성과 교도소제도의 주어진 현실 및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 코스에서 재소자들은 소묘, 유화,

사진, 영상제작, 모델링, 조작 등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따라 내용적으로 논의하여 보고 계속적인 작업과정에 끼어넣는 것이다. 작업계획, 관점 그리고 착상은 언제나 새롭게 토론된다. 적절한 실현가능성도 함께 탐구된다. 행사의도에 관한 의사소통은 코스참가율이 높은 외국인 재소자에게는 단지 언어적인 문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재소자와 진행자간의 문화적 관습과 경험에도 커다란 균열이 종종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코스를 팀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의미 있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팀은 보다 장기간의 계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재소자 전체의 다양한 기대수준을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과 갈등이 해소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처리될 수 있게 해준다.

6. 對話그룹

종종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주제별로 대화그룹이 제공되고 주도된다. 개신교 및 천주교의 시설내 성직자들은 특히 예배준비를 위하여 그러나 또한 계속되는 주제에 대화그룹을 조직하기 위하여 진력한다. 또한 정당조직도 이 분야에 참여한다. 가장 사랑받는 것은 외국인 재소자를 위하여 모국어(예컨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그룹)로 대화하는 그룹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외래의 외국인 상담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이끌어진다.

7. 演技班, 映畫班, 家庭經濟, 健康增進코스

오래전부터 연기그룹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양장기, 스카트(세 명이 32장으로 노는 카드놀이) 또는 사교춤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잠시동안 자유시간을 보내는 데 유용하다. 텔레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규모시설에서) 영화클럽이 존재한다. 영화나 신청된 비디오가 클럽의 룸에서 상영되고, 이어서 가능하면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밖의 활동들

- 주거그룹이 딸린 시설에서는 종종 취미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의 이용
- 재단 및 뜨개질반, 많은 경우 남자교도소에서도 개설
-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약물과 알콜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
- 요가와 정신수양훈련입문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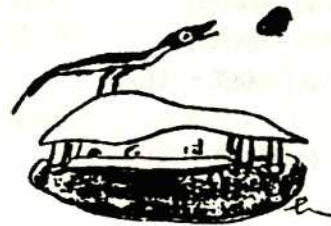
8. 在所者新聞

자유시간에 동료재소자와 관심 있는 일반공중을 위한 신문의 제작과 배포에 재소자들은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제호의 재소자신문들이 간행되고 있다. 부츠박호교도소에서는 공공회람 이외에 'Wendepunkt(전환점)', 다름슈타트교도소에는 'Intern' (초판은 Fritz-Bauer-Zeitung),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에는 'Der Wochenspiegel(주간반사경)', 프랑크푸르트 제2교도소에는 'Höchster Gitterblick(창살들여다보기)', 프랑크푸르트 제3교도소에는 'Kaktus(선인장)', 풀다에서는 'Zeitlos(순간적인)', 카셀 제1교도소에는

'Postfach 71(사서함 71)',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슈발름슈타트교도소의 'Scwalmstadt Schlößchen(슈발름슈타트의 작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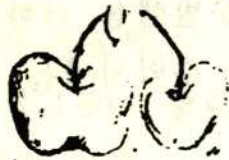
교도소장이 직접 발행하는 교도소 내부소식을 위한 정보지와 달리 재소자신문은 전적으로 재소자가 편집작업을 한다. 물론 여기도 발행인은 교도소장이 되며, 때때로 자원봉사자가 편집에 조언을 하기도 한다. 신문발행을 위한 기부금수입은 줄었고, 주된 수입원은 교도소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조달된다.

* 독일 헷센주 교정제도에 관한 자료는 이것으로 마칩.



矯正資料

臺灣 行 刑 法



〈編輯室〉

〈目 次〉

제 1 장 총칙(제 1 조 - 제 6 조)	제 10 장 영치(제 69 조 - 제 73 조)
제 2 장 신입자 수용(제 7 조 - 제 13 조)	제 11 장 상벌 및 배상(제 74 조 - 제 80 조)
제 3 장 수용(제 14 조 - 제 20 조)	제 12 장 가석방(제 81 조 - 제 82 조)
제 4 장 계호(제 21 조 - 제 26 조의 1)	제 13 장 석방 및 보호(제 83 조 - 제 87 조)
제 5 장 작업(제 27 조 - 제 36 조)	제 14 장 사망(제 88 조 - 제 89 조)
제 6 장 교화(제 37 조 - 제 44 조)	제 15 장 사형의 집행(제 90 조 - 제 92 조)
제 7 장 급여(제 45 조 - 제 47 조)	제 16 장 부칙(제 93 조 - 제 94 조)
제 8 장 위생과 의료(제 48 조 - 제 61 조)	
제 9 장 접견과 서신(제 62 조 - 제 68 조)	

註: 이 자료는 1946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된 후 4차에 걸쳐 수정·보완되어 현재시행되고 있는 대만 행형법으로서 각국 행형법을 비교연구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 생각되어 번역한 것임.

대 만 행 형 법

1946년 1월 19일 국민정부 공포 1946년 6월 10일 시행
 1954년 12월 25일 총통부 수정 공포
 1957년 1월 7일 " "
 1974년 12월 12일 " "
 1980년 12월 1일 " (제5, 26조의 1, 2731, 33, 75, 81, 90조 및 93조의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징역형, 구류형, 집행의 목적)

징역형, 구류형의 집행은 수형자의 개신과 사회 생활에 적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징역형, 구류형의 집행 장소)

- (1) 수형자의 징역형, 구류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감옥안에서 집행한다.
- (2) 구류형에 처하는 자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는 자와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 3 조 (소년교도소)

- (1) 수형자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 (2) 수용 중 만 18세가 될 경우 그 잔여 형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계속하여 소년원에 수용한다.
- (3) 수형자가 18세 이상 20세 미만일 경우에도 그 심신 발육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는 앞 2항의 규정에 따른다.

- (4) 소년수용사동이 성인감옥에 부설되어 있을 때에는 그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 (여자 및 그 분계)

- (1) 여자 수형자는 반드시 여자수용사동에 수용하여야 한다.
 (2) 여자수용사동이 남자감옥에 부설되어 있을 때에는 그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 (감옥의 순열과 사찰)

- (1) 법무부는 매년 1회 이상 순열관으로 하여금 감옥을 순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찰관은 형법의 집행과 관련있는 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수시로 감옥을 시찰할 수 있다.

제6조 (수형자의 청원권)

- (1) 수형자가 감옥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소장을 통하여 감독 기관 혹은 순열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심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감옥의 처분은 효력이 정지 되지 아니한다.
 (2) 소장은 전항의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감독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신입자 수용

제7조 (입소시 서류조사)

- (1) 수형자가 입소한 때에는 반드시 판결문, 집행지휘서, 지분 및 기타 구비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전항에 열거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용을 거부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소년수형자의 행형 참고 사항 통지)

제3조의 소년수형자의 범죄 원인, 동기, 품행, 환경, 학력, 경력, 심신 상태 및 행형상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소시에 집행지휘기관에서 감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형자 개인신상 및 필요사항의 조사)

- (1) 수형자가 입소한 때에는 반드시 개인신상 및 기타 필요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확정판결된 소송기록을 읽어 보아야 한다.

제10조 (여자수형자에 대한 대동유아 허가)

- (1) 입소시 여자 수형자가 대동유아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3세 미만자에 한한다.
 (2) 전항의 대동유아가 만 3세가 넘은 후에도 맡아 기를 사람이 없거나, 기탁할 곳이 없을 때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구호소에 인계시킨다.
 (3) 전2항의 규정은 재소중 분만한 유아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 (입소시 건강진단)

- (1) 수형자가 입소한 때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삼신상실** 질병으로 인하여 **형 집행 중 사망**이 우려되는 자
 2. 임신 5개월 이상, 또는 분만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급성 전염병환자

4. 노쇠, 불구 등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자.

(2)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입소가 거부된 사람은 검찰관의 상황 판단에 따라 병원, 감호인, 혹은 기타 적절한 장소에 넘겨져야 한다.

제12조 (신체, 의류의 검사)

(1) 수형자가 입소할 때에는 반드시 신체, 의류 및 휴대물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또한 지문날인,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재소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여자수형자에 대한 전항에 규정된 검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수사항의 고지)

수형자가 입소할 때에는 준수사항 및 형기 개시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거실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수용

제14조 (수용의 종류-독거와 혼거)

(1) 수용은 독거와 혼거 두종류로 분류한다. 독거수용자는 독거방에서 작업을 한다. 단, 교화, 작업 및 처우상 필요할 경우에는 작업, 연령, 전과, 형기 등에 따라서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혼거수용자의 교화, 작업 등의 활동은 동일 장소에서 행한다. 단, 야간에는 직업, 연령, 전과 등에 따라 분류하여 수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독거방에 수용한다.

제15조 (신입자 독거수용)

신입자는 우선 독거수용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3개월이다. 형기가 비교적 짧은 자는 그 형기에 따라 결정한다. 단, 수형자의 심신상태나 기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교도소 운영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독거수용 우선순위)

아래에 열거된 수형자는 우선적으로 독거실에 수용한다.

1. 형기가 6개월 미만인 자
2.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심리중에 있는 자
3. 문제 수형자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진과사실이 있는 자

제17조 (분리수용)

수형자가 노쇠, 질병, 불구로 인하여 기타 수형자와 혼거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제18조 (분리 수용 대상자)

아래에 열거한 수형자는 반드시 지정된 감옥 혹은 감옥 내에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1. 형기 10년 이상자
2. 상습 범법자
3. 다른 수형자에게 현저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자
4. 정신 박약·지능저하자
5. 분류조사 결과 교화, 교육이 필요한 자

제 19조 (심신상태 검진 대상자)

(1) 형기 1년 이상인 수형자는 그 심신 상태를 특별히 검진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에서 분리 수용한다. 단 형기가 1년 미만인 수형자는 필요한 경우에 감신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검진은 반드시 의학, 심리학 등의 지식에 근거하여 개성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누진처우)

- (1) 형기 1년 이상인 수형자에게 개과친선육 촉진시키고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몇 단계의 누진계급으로 나누어 처우한다. 단, 심신상태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도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누진 처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2) 누진처우 제도의 운영방법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누진 처우 대상이 아닌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선행을 행한 경우 소정의 명령에 의하여 그 처우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제4장 계 호

제 21조 (계호)

교도소는 주야를 막론하고 엄중한 계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출입자의 의복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계구의 사용)

수형자가 도주, 자살, 폭행 혹은 기타 질서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계구는 수갑, 연쇄, 포승, 각요(脚鐐) 4종류로 제한한다.

제23조 (계구 사용의 제한)

계구는 소장의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곤봉, 총기, 사용의 제한)

교도관은 곤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로 그 사용을 제한한다.

1. 수형자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협박을 하는 때
2. 수형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그 무기 명령에 불응할 때
3. 다중의 수형자가 모여 소요하는 때
4. 폭력으로 수형자를 탈취하거나, 혹은 수형자의 폭행 도주를 방조하는 때
5. 도주를 도모하거나 체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제지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때

제25조 (천재지변에 대한 조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방위 작업을 할 때에는 수형자를 분리시켜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군경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천재지변에 대한 조치-호송 및 석방)

-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교도소내에서 대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형자를 안전한 장소로 호송한다. 호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시 석방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일시 석방된 수형자는 석방된 후 48시간 이내에 귀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시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단, 48시간 이내에 귀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주로 간주한다.

제26조의 1 (귀휴 사유)

- (1) 수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교도관의 제호하에 귀휴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환소하여야 한다. 교도소 밖에서 제류한 시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 (2) 수행자가 중대사고로 인하여 귀휴가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의 허가 아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작 업

제27조 (작업의 지정)

- (1) 작업은 반드시 위생, 교화, 수행자의 형기와 생활수준, 건강, 지식, 기능 및 출소후의 생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감옥은 반드시 작업 성질에 따라시 각종 공장과 농작물 재배 장소를 설치하고, 또한 수행자가 교도소 밖에서 특정 작업에 취업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 (3) 취사, 청소, 간호 및 기타 관용작업은 교도작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28조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1일 6시간-8시간으로 하며, 작업의 종류, 시설 환경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29조 (작업과정의 결정과 작업기술의 지도)

- (1) 수행자의 작업과정은 반드시 전조의 작업시간과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작업 능률을 표준 삼아 결정하여야 한다.
- (2) 작업과정은 전항의 일반 노동자의 평균능률 보다는 전조의 작업 시간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감옥은 해당지역의 공업기술자를 초빙하여 수행자에게 각종 작업 기술지도를 협조 받을 수 있다.

제30조 (작업의 허가)

감옥은 공사 작업을 맡게 되면 반드시 감독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31조 (작업정지일)

(1) 작업 정지일은 다음과 같다.

- 1. 기념일
- 2. 일요일 오후
- 3. 직계 친족 및 배우자 상은 3-7일, 3촌 이내 방계 친족 상은 1-3일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2) 취사, 물청소 및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전항의 제3호를 제외하고는 작업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입감후 3일, 석방전 3일은 작업을 면제한다.

제32조 (임금의 급여)

작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그 평균 소득액은 당해지역 공장의 완성품 가격 혹은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 임금의 20% 이하에서는 안 된다.

작업 노임금액은 작업자의 행실과 작업자의 성격을 토대로 정한다. 전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법무부에서 정한다.

제33조 (작업 수입의 분배)

작업수입은 작업지출을 제외한 잉여 금액으로서 매월 20%는 수행자 음식 비용, 5%는 수행자 장려 비용, 5%는 작업관리인 장려비

矯正資料

臺灣行刑法

〈編輯室〉

제7장 급여

제45조 (옷, 담요 및 기타 필수도구의 급여)

수형자에게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 옷, 담요 및 기타 필수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신체 영양의 증진을 위해 매월의 노임을 사용할 수 있다. 진항의 노임 사용방법은 소장이 실제 상황에 의거 추산하여 감독 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6조 (자녀의 필수용품의 자변 혹은 급여)

자녀를 대동한 수형자는 자녀의 음식물, 의류 및 필수용품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한다. 자변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급여 또는 공급하여 사용한다.

제47조 (음주, 흡연의 금지)

수형자는 음주, 흡연할 수 없다.

용으로 사용하며, 그 나머지의 80%는 직업 기금으로 20%는 감옥 내부 시설 改修에 충당한다. 진항의 감옥내부시설 개수 부분에 사용된 금액은 당해년도 예산에 산입되며, 장리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정한다.

제34조 (노역유치자 구외 작업)

노역유치자는 구외에서 작업한다. 단, 구외에 적당한 작업장소가 없을 때에는 감옥에 설치된 노역장소에서 작업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다른 수형자와 분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위로금의 급여)

수형자가 작업중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출옥후 생계를 영위하기 곤란한 자에게는 위로금을 급여한다.

제36조 (사망시 위로금, 노임의 귀속)

수형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노임과 위로금은 본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지급된다.

진항의 노임과 위로금은 수형자의 가까운 친족이 없거나 친족에게 통지한 후 6개월동안 수령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38조 (종교의식의 거행 및 제한)

수형자는 그 소속된 종교에 따라 예배, 기도를 거행하거나 기타 적당한 의식을 행할 수 있다. 단, 이는 기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된다.

제39조 (교화의 중점 사항)

교화는 국민도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데 둔다.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덕육, 인격도야 그

제 8 장 위생과 의료

제 18 조 (청결의 유지)

감옥안에서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15일에 한번씩 환경위생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수형자가 물청소, 세탁, 의복, 담요, 기구의 정리 등 필요사무를 담당하도록 감독 명령하여야 한다.

제 49 조 (수염·두발의 정리)

수형자는 목욕과 면도, 이발을 하여야 한다. 그 회수는 계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50 조 (보건상 필요한 운동)

수형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30-60분 간의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작업종류가 운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51 조 (건강 진단 및 예방주사)

수형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절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두, 혈청주사 등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감옥에서는 그 지역 의학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소협진위원회(監所協進委員會)를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료기구 및 약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52 조 (급성 전염병의 예방)

감옥내에서 급성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지방위생 담당 기관과 협조하여 예방하고,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과 그 지역을 거쳐 간 수형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격리시켜야 하며 그들의 휴대품

은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급성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격리, 소독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전염병 환자의 격리)

전염병 환자는 건강한 자 및 기타 질병환자의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간호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4 조 (병사수용)

위급한 환자는 부설 병사에 수용하여야 한다. 전향의 병사는 기타 사망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필요에 의해 격리시켜야 한다.

제 55 조 (폐결핵 사동 수용과 분리)

결핵환자는 특별히 설치한 결핵환자사동에 옮겨야 하며 결핵사동이 없을 때는 병사내에 분리수용 시킨다.

제 56 조 (심신상실자의 처우)

수형자가 심신상실 되었을 때는 정신병원이나 기타 치료감호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57 조 (자비치료)

질병에 걸린 수형자가 자비로 외부의사의 진료를 요구할 때에는 소장은 허가할 수 있다.

제 58 조 (외부치료, 병원이송)

수형자가 걸린 질병이 감옥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감독기관에 외부치료, 병원의 이송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소장은 사태가 위급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우선 전항의 조치를 취한 후 감독기관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외부치료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병감외부 병원에 이송한 것은 감옥내로 본다. 외부치료자는 형사소송법에 관계되는 규정을 적용 받는다. 노쇠, 불구로 인하여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자, 임신 5개월이상, 또는 분만후 2개월미만인 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강제급식의 실시)

음식물 섭취 권유에 불구하고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험한 자는 의사를 통하여 강제 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 (보건상 필요한 공기, 광선의 보장)

거실, 공장 및 기타 장소에는 반드시 보건상 필요한 공기, 광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 (난방기구의 설치 및 사용)

거실, 공장에는 혹한기에는 난방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병사의 난방기구 설치 및 사용시간은 소장이 정한다.

제9장 접견과 서신

제62조 (접견과 서신)

수형자의 접견 및 서신은 가까운 친족 및 가족에 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 접견 및 서신을 허가할 수 있다.

제63조 (접견의 회수와 시간)

접견은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1회,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접견 회수 및 시간은 필요시 증가 또는 연장시킬 수 있다.

제64조 (접견의 금지)

접견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감옥 기율과 수형자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견을 불허한다.

접견을 허가받은 자는 5세 미만의 아동을 대동할 수 있다.

제65조 (감시 및 접견의 정지)

접견시에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감시하여야 하며 접견중 감옥기율을 해칠 일이 발생하면 그 접견을 정지시킨다.

제66조 (서신 수발의 검열 및 제한)

만약 감옥기율을 방해할 사유가 있으면 서신 수발을 불허한다.

불허된 서신은 폐기처분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감옥규칙을 위반한 것은 그 부분을 삭제한 후 수발한다.

제67조 (서신의 보관)

수형자의 서신은 본인의 열독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본인이 소지할 수도 있다.

제68조 (발신요금)

발신요금은 수형자 자비로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옥에서 지급한다.

제 10 장 영 치

제69조 (휴대금품의 보관)

수형자가 휴대 또는 외부에서 보내온 금품은 검사를 기친후 담당직원이 대신 보관한다. 진항의 물품은 필요한 경우 소독하여야 한다.

제70조 (영치물품의 제한)

영치시키는 음식·필수품의 종류 및 수량은 제한되며, 허가된 물품만 본인에게 넘겨준다.

제71조 (영치된 물품의 반송, 폐기)

금품의 영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영치인의 생명, 거주가 불명하거나 수형자가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반드시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불가능할 때에는 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폐기 처분한다. 검사를 거쳐 당사자 1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 처분한다.

제72조 (보관 금품의 환부와 사용)

보관된 금품은 석방시에 환부하며,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석방전에도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3조 (사망자 유품의 귀속)

사망자가 남긴 금품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수령 신청이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며 도주한 자가 도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체포되지 않으면 또한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 11 장 상벌 및 배상

제74조 (포상원인)

수형자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포상하여야 한다.

1. 수형자가 도주·폭행을 도모하거나 실행하려는 것을 신고한 자.
2. 인명을 구조하거나 도주자를 체포한 자.
3. 천재지변, 전염병 유행시에 응급 구호업무에 공로가 있는 자.
4. 작업 성적이 우량한 자
5. 특수한 공헌으로 감옥의 명예를 높인 자
6. 작업기술, 기기설비, 위생의약 등에 대하여 특수한 설개로 기술을 잘 이용하는 자
7. 감옥내외의 관리 개선에 대해 우수한 창안을 건의한 자
8. 기타 선행이 다른 수형자에게 모범이된 자.

제75조 (포상방법)

전항의 포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공개적인 칭송
2. 접견, 서신 회수증가
3. 상장수여
4. 성적상향 조정으로 진급(누진제급)
5. 장려금 지급
6. 서적 및 기타상품 지급
7. 비교적 우량한 급여품 보급

수형자에게 포상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 (징벌사유 및 방법)

수형자가 기율위반을 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열거된 것에서 1-수항에 걸쳐 징벌한다.

1. 훈계
2. 집전 1-3차 정지
3. 강제노동 1-5일, 매일 2시간이내
4. 물품구매 정지
5. 노임감소
6. 금치 1-7일

제77조 (노임감액의 의결)

20원 이상의 노임을 감액하거나 금치 3일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8조 (징벌의 고지와 해명)

징벌을 고지한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해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완화시키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즉각 집행을 한다. 단 질병에 걸린 자와 기타 특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79조 (징벌집행의 철회와 종료)

전조의 집행의 완화에 의해 징벌을 받은 자가 현저하게 누우칠 때는 1월이상의 선행으로서 그 징벌을 철회한다. 징벌 집행중에 있는 자가 현저하게 누우칠 때는 그 집행을 종료시킨다.

제80조 (물건훼손의 배상)

수형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구, 완제품, 재료 혹은 기타 물품을 훼손 시켰을 때에는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배상액수는 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보관금이나 예치된 작업 노임에서 공제한다.

제 12 장 가석방

제81조 (가석방 요건)

수형자가 누진처우에 있어서 2급 이상에 이르고, 회개의 뜻이 뚜렷하여 가석방 요건에 합치된 자에 대해서는 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에 허가를 청구하여 허가를 얻어 출소시킬 수 있다. 가석방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수형자가 명확히 개전의 정을 증명할 자료와 감무위원회의 결의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2조 (가석방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의 규정 준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가석방 기간내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장 석방 및 보호

제83조 (석방 및 기간의 제한)

만기는 그 형기종료 다음날 오전에 석방한다. 가석방이 허가된 자는 소장에 의해 공식적인 출소통지를 받음으로써 가석방 허가서가 주어지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으로 옮겨진다. 사면을 받은 자는 공문서 도착 후 늦어도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84조 (보호사항의 조사와 처리)

석방후의 보호사항 조사는 입소 당시 조사를 거쳐 석방전에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호는 보호자, 경찰기관, 자치단체, 자선단체 및 가까운 친족이 맡는 출소자를 제외한 기타 출소자의 직업의 소개, 보도(輔導)자료의 전달 및 의식주의 유지 등의 유관사항은 당해 지역 갱생보호단체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85조 (석방전의 준비사항)

만기석방자는 10일 전에 석방후의 보호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작업노임의 지급 방법과 보관금품의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

제86조 (석방시 준비사항 참작)

석방시에는 피석방자의 건강을 참작하여 적절하게 의류 및 숙소 여비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의 의류·여비물 준비할 수 없을 때에는 급이해 주어야 한다.

피석방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상태를 참작하여 교도소에 머물러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87조 (환자 석방시 가족에게 통지)

중병자, 정신병자, 전염병자를 석방할 때에는 우선 가족 혹은 기타 적당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병자, 전염병자 석방시에는 거주지의 경찰관서, 지방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장 사 망

제88조 (감옥내에서 사망한 때의 처리)

수형자가 감옥에서 사망하면 소장은 검찰관에게 통지하여 확인토록 하고, 가족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에 조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

제89조 (시체의 처리)

사망자의 시체는 통지후 24시간 내에 수령하는 자가 없으면 매장한다. 만약 병원이나 의학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위해 시체 해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황을 참작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생전에 해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미 매장된 시체는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합장하며, 합장전에 유골의 수령을 청구하는 자가 있으면 허가한다.

제 15 장 사형의 집행

제90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전기 혹은 가스를 이용하며 감옥의 특정장소에서 집행한다. 전기형구나 가스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살한다. 그 집행방법은 법무부가 정한다.

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일기된 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91조 (사형집행의 고지)

사형집행은 반드시 당일에 우선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2조 (사체처리 규정의 준용)

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사형집행된 시체를 처리한다.

日本の行刑法改正の經過와 改正案의 内容(上)



朴 在 允

〈國民大 教授〉

〈目 次〉

一. 머리말	나. 戰後의 改正作業
二. 日本 行刑法 改正의 沿革	(1) 行刑法改正委員會
1. 前史	(2) 監獄法 改正 調査委員會
2. 現行 監獄法의 成立	(3) 監獄法 改正要綱 假草案
3. 監獄法의 部分的 改正	(4) 刑務所法(假稱)假要綱案
4. 監獄法의 全面 改正作業	(5) 刑事施設法案 등
가. 戰前의 改正作業	(6) 法制審議會 監獄法改正部會
(1) 行刑制度調査委員會	三. 刑事施設法案의 内容
(2) 監獄法 改正調査委員會	四. 맺는말
(3) 刑務法案調査委員會	
(4) 刑法 및 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	

一. 머리말

日本 現行 監獄法은 被收容者의 處遇와 矯導所의 管理에 관한 基本法으로서 일찌기 1908년에 制定된 이래 80년이 經過되있으나, 그간 다른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에 따른 部分的인 修正을 제외하고는 그 基本的인 内容에 있어서 아무런 改正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制定當時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進步的인 行刑立法이있

제 16 장 부 칙

제93조 (외역감옥의 설치)

수형자로 하여금 농사나 기타 특정작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외역감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

제94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지만, 그 基本的인 思想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의 것으로서 被收容者에 대한 強制的 規律의 確保, 監獄의 安정한 管理, 受刑者의 엄격한 隔離 및 內省과 勤勞에 의한 改善 등에만 主眼을 두는 데 그쳤다. 거기에는 受刑者의 矯正 및 社會復歸를 위한 處遇라고 하는 近代行刑의 理念은 表明되지 않았고 또한 受刑者의 法的 地位 내지 國家와의 사이의 權利·義務關係에 대해서도 명확한 認識이 결여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후에 있어서 社會情勢의 變化나 刑事政策思想의 進展에 따라 위와 같은 監獄法의 原理에는 점차 修正이 要求되기에 이르러 수차례에 걸친 監獄法 改正이 試圖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實務運營上의 施策에 의하여 行刑의 實質的인 變革이 試圖되는 한편, 受刑者의 自律的 努力에 기한 改善을 意圖하는 것으로서 「行刑累進處遇令」의 制定, 기타 關係省令의 改正 등 時勢의 進展에 應하여 각종의 방책이 강구되어 오던 중, 1976년에는 法制審議會에 대하여 監獄法의 全面改正에 관한 諮問이 요청되었고, 同 審議會를 중심으로 行刑處遇의 主要한 事項에 대한 檢討가 본격적으로 進行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日本의 行刑上 다년간의 懸案問題인 新行刑法의 制定은 오래지 않아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후 벌써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法制定을 위한 보다 밀도 있는 研究와 論議가 進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法案의 國會通過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現行의 監獄法이 制定된 이래 時勢의 變化 및 矯正處遇觀念의 變遷에 따라 이 법이 어떻게 行刑의 現實에 對應하여왔

으며 나아가 根本的인 法改正을 위하여 어떠한 作業이 있어왔는지를 沿革的으로 살펴보고 그와 같은 研究와 討論의 結晶體로서 現재 日本國會에 上程되어 있는 「刑事施設法案」은 어떠한 것인지 그 內容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行刑法 改正을 위한 資料로 삼고자 한다.

二. 日本 行刑法 改正의 沿革

1. 前史

監獄法이 制定되기 이전의 日本의 行刑으로는 밀리 1790년 德川幕府의 人足寄場과 같은 特有의 犯罪人處遇制度가 있었다고 하나, 그것이 法制의 形式으로 만들어진 것은 1872년 小原重哉가 起草한 監獄則 및 圖式에서부터이다. 그러나 이 小原監獄則은 報告書的, 大綱的, 視覺的이어서 法規로서의 實效性은 본래 극히 부족하여 이른바 施行細則을 가지지 않은 憲章의 性格을 띤 것이었다. 小原監獄則은 이러한 法規로서의 결함은 물론 그 施行을 위한 여건의 미성숙 특히 豫算上의 制約으로 다음 해(1873) 4月 法으로서의 效力을 停止당했다.

그후 1873. 11月부터는 內務省이 獨立하여 監獄事務를 管掌하였는데, 1881年 3月 內務省은 監獄官, 傭人의 명칭을 통일하여 長인 典獄 이하에 副典獄, 書記, 看守長, 看守, 押丁이라는 職制를 마련하였고, 同年 9月에는 舊刑法, 治罪法을 참조하여 第2次 監獄則(舊監獄則)을 制定하였다. 第2次 監獄則도 小原이 起草하였는데 1872년의 小原監獄則 및 1875年 1月의 囚人給與規則을 改正한 1881年 3月의 在監人給與規則과 同年 7月의 在監人雇工錢規則의 세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全文 113條의 방대한 것이었다. 여기서의 監獄에는 留置場, 監倉, 懲治場, 拘留場, 懲役場, 集治監의 6種이 規定되었으며 각각 그 拘禁場所를 구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立法의 拙劣함과 法規로서의 非現實性 그리고 監獄費國庫支拂 停止라고 하는 財政上의 理由 등으로 인하여 規定의 대부분이 死文化되고 말았다.

1889年 7月 監獄則은 다시 改正되었다. 새로운 監獄則은 모두 52 個條에 불과하였으나, 상세한 것은 동년 7月의 監獄則施行細則 全 106條에 規定되었다. 이것은 警保局長인 清浦奎禧의 지도아래 주로 小河滋次郎이 作業을 하였으며, 당시 訪日하였던 독일인 Seebach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改正은 극히 部分的이었으며, 小河자신도 만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監獄則에서는 監獄의 종류를 集治監, 假留監, 地方監獄, 拘置監, 留置場 및 懲治場으로 구분하였고, 未決者의 명칭을 刑事被告人이라 부르고 동시에 가능한 한 處遇를 緩和하도록 하였으며, 懲治場을 廢止할 수는 없었지만 情願懲治의 規定을 削除하여 이러한 類의 것은 私立感化院에 맡길 方針을 취하였고, 前科者의 別房留置도 폐지하여 私設保護團體에 맡기도록 하였다. 또 傳告者, 誘工者라고 하는 牢名主制의 흔적을 規定에서 一掃하려고 하였다. 이미 小原監獄則 이래 累進處遇의 規定이 보이고 第2次監獄則에도 賞譽制度가 있어서 약간의 優待가 주어졌지만(23~24조, 96~102조), 이 監獄則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賞譽의 賞表로서 엷은 푸른색의 천을 왼쪽소매에 꿰매어붙여서 그 數에 따라 假出獄 등의 資料로 함은 물론 監房, 糧食, 衣類雜具, 書信, 沐浴 등에 관한 優待程度

를 규정하였다(40~41조, 시행규칙 95~98조)

2. 現行 監獄法의 成立

1907年 4月에는 現行의 刑法典이 改正·公布되어 다음해 10月1日부터 施行되었고, 이어 1908年 3月 비로소 監獄에 관한 法規는 종래 監獄則이라는 形式의 行政命令이 아닌 帝國議會를 通過한 法律로서의 監獄法(法律28號)이 公布되고 6月에는 施行規則(司法省令18號)을 정하여 刑法과 함께 同年 10月1日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監獄法은 Karl Krohne에 의한 1902년의 Preußen 內務省所轄 監獄則(Dienstordnung für die dem Ministerium des Innern unterstellten Strafanstalten und größeren Gefängnisse)을 주로 참조하였고, 起草에 小河도 관여했으나, 주로 監獄局長인 小山温, 그리고 谷田三郎이 활약하였다.

監獄法에서는 監獄을 懲治監, 禁錮監, 拘留場 및 拘置監의 4種으로 分類함과 아울러 監獄에 勞役場을 附設하는 한편 警察官署에 부속된 留置場을 監獄으로 代用할 것을 認定함으로써(1조3항) 오늘날에도 論難이 되고 있는 代用監獄이 생겨났다.

少年監을 特設하여 少年受刑者는 特別少年監으로 分離收容하게 하였다(2조). 懲治場은 1908年 4月의 感化法改正(法律43호)에 따라 未成年者의 懲治·感化處分이 感化院에서 實施하는 것으로 되어 監獄에서 분리되었다. 舊刑法上의 別房留置도 刑法에서 監視制度가 폐지되었으므로 消滅되었다. 또한 監獄에서 少年無產者, 放浪者에 대한 保護·保安處分을 위한 施設도 분리되었다.

3. 監獄法の 部分的 改正

現行 監獄法은 80여년 동안 1953년의 改正까지 모두 6회의 部分 改正을 받았다. 그중에는 예컨대, 1947년의 檢察廳法改正에 따라 「檢事」를 「檢察官」으로 고쳐부르는데 따른 改正과 같이 形式的인 것이 내부분이나 1949년 犯罪者豫防更生法の 施行에 따라 假出獄者의 遵守事項을 정한 67條를 削除한 것과 같이 實質的 意味를 지니는 것도 있다.

그러나 監獄法の 全面改正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는 달리, 實質的으로 監獄法을 形成하는 監獄法施行規則, 기타의 行政命令은 質과 量에 있어서 상당한 改正을 보았다. 특히 1933年 10月25日 制定되어 다음해 1月1日부터 施行된 「行刑累進處遇令」은 日本에서의 受刑者處遇의 理念과 實際에 커다란 變革을 가져오게 했다. 同令은 制定當時 11章 91個條에 그 內容으로는 拘禁·作業·教化·接見·信書·給養 등 受刑者處遇 全般의 것을 담았으며 施行이래 同令이 實質的으로 日本行刑의 中心法規로서 機能하였다.

監獄法施行規則은 1977年까지 38회의 改正이 있었는데, 특히 1920년대 行刑改良期에는 대폭적인 改正을 겪었다.

同規則은 또한 第2次大戰직후에도 人權尊重思想의 高揚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比較的 重要な 改正이 있었다. ① 作業賞與金の 不計算은 就業者の 行狀不良 및 作業成績劣等의 경우 그리고 入所后 2個月間, 釋放月, 15日 미만의 就業의 경우에 限하게 하였다(규칙 70조). ② 作業賞與金은 本人이 死亡한 경우 그의 配偶者, 子, 父母에게 支給할 수 있게 하였다(규칙 75조). ③ 受刑者의 衣類는

③ 巡閱官制度를 채용함

④ 改善의 目的을 달성하고, 社會生活의 準備을 完了하도록 하는 累進處遇制度를 채용함

⑤ 個別處遇의 適切을 기하고 心身考查의 施設을 위하여 拘禁分類의 기초를 확립함.

⑥ 獨居拘禁의 期間을 短縮함

⑦ 收用者遵守事項의 規定을 둠

⑧ 非衛生的인 戒具를 폐지함

⑨ 作業訓練의 徹底를 기함

⑩ 作業經營의 方針을 확립함

⑪ 作業時間은 普通勞動을 참작하여 定함.

⑫ 保健施設의 改善을 도모함.

⑬ 信教自由의 原則을 확보함.

⑭ 教育의 方針을 確立함.

⑮ 書信 및 接見에 있어서 특히 教化와 釋放後의 保護에 관한 점을 考慮함.

⑯ 懲罰에 관한 規定을 改正하고 특히 非人道的이고 非衛生的인 懲罰을 폐지함.

⑰ 釋放者保護監督의 實을 거두기 위하여 適當한 規定을 둠.

⑱ 女子受刑者에 대한 特別處遇를 考慮함.

⑲ 少年受刑者에 대하여 少年法の 취지에 따라 특히 教化方針을 高調시킴.

⑳ 勞役場留置의 執行에 있어서 自由勞役に 의한 罰金·料料의 償却을 認定함.

日本 行刑法改正의 經過와 改正案 內容(下)



朴 在 允
(國民大 教授)

(目 次)

一. 머리말	나. 戰後의 改正作業
二. 日本 行刑法 改正의 沿革	(1) 行刑法改正委員會(刑務協會)
1. 前史	(2) 監獄法 改正調査委員會
2. 現行 監獄法의 成立	(3) 監獄法 改正要綱 假草案
3. 監獄法의 部分的 改正	(4) 刑務所法(假稱)假要綱案
4. 監獄法의 全面 改正作業	(5) 刑事施設法案 등
가. 戰前의 改正作業	(6) 法制審議會 監獄法改正部會
(1) 行刑制度調査委員會	三. 刑事施設法案과 그 修正案의 內容
(2) 監獄法 改正調査委員會	四. 맺는말
(3) 刑務法案調査委員會	
(4) 刑法 및 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	
(이상 1月號 게재)	

4. 監獄法의 全面 改正作業

나. 戰後의 改正作業

1945년 第2次大戰의 終戰과 더불어 社會情勢도 思想도 眞에 없던 變化를 겪었다. 우선 憲法의 改正이 추진되었고 주요한 法律도

① 未決拘禁에 있어서 刑事訴訟法의 趣旨에 따른 身體 및 名譽의 保全에 注意하고 그 取扱을 改善함.

② 保安處分의 執行에 관한 規定을 듬.

이들 項目을 一見해보면, 累進處遇의 導入, 假釋放者의 監督保護 強化 등 현재로서는 이미 解決된 것이 있는 반면, 遵守事項의 法定, 懲罰制度의 改善 등 앞으로의 改正作業에 있어서도 重要한 課題가 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 이 委員會는 48회의 審議를 거쳐 1946年 4月17日 「修正刑務法案」을 司法大臣에게 提出하였다.

(4) 刑法 및 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

1927年 6月2日에 이 委員會가 設置되어 監獄法改正起草委員이 指名되었다. 名稱에서 알 수 있듯이 별도로 행해지고 있던 刑法改正作業과 관련하여 監獄法改正作業이 推進되었다. 실제로는 「修正刑務法案」을 當局이 다시 檢討審議한 結果인 「刑務法改正豫備草案」과 「監獄法改正의 綱領」을 對照審議하였으나, 7月9日의 第4回會議에서 刑法關聯事項의 審議終了까지 休會하기로 合意함으로써 事實上 그 活動을 終了하였으며, 그후 1940년까지 公式的으로는 監獄法改正問題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1940年 5月3日에 다시 委員會가 構成되었고, 刑務當局으로부터 「監獄法改正의 綱領修正意見」이 提出되었다. 다만 이 修正意見은 內容上으로는 原案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委員會는 이 修正案에 기하여 本案起草를 시작하였고, 當局도 새로 「刑務法案」을 作成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第2次大戰前의 艱박한 상황때문에 일찌 감치 同年 9月에 委員會는 休會하는 것으로 끝났다. <續>

民主憲法에 걸맞게 大變革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監獄法改正에 먼저 손을 낸 것은 財團法人 刑務協會(현재의 矯正協會)였다.

(1) 行刑法改正委員會(刑務協會)

1945년 이 委員會는 正木亮을 委員長으로 하여 判檢事·學者의 에도 吉川英治, 賀川豊彦 등 저명한 民間知識人들도 다수 참가하여 특이하게 구성되었다. 때마침 人權尊重 民主主義思想이 支配的이어서 1946년 12월5日 同委員會가 司法大臣에게 제출한 「監獄法改正에 관한 建議要綱」(17항목) 및 「附帶建議要綱」(9항목)은 상당히 理想的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監獄法의 根底를 人間價値를 존중하는 人權保障에 둠.
- ② 監獄法을 自由刑의 執行과 未決拘禁에 관한 2法으로 나누어 刑事被告人에 대하여는 새로운 構想에 기하여 그 取扱方法을 정함.
- ③ 刑務委員會制度를 채택함.
- ④ 行刑의 운영에 있어서 受刑者의 意見을 적당히 수렴하는 方法을 考慮함.
- ⑤ 假釋放請求權을 인정함.
- ⑥ 中間的 處遇를 인정함.
- ⑦ 作業賞與金을 廢止하고 賃金制를 채택함.
- ⑧ 특정한 受刑者에게 喫煙의 自由를 인정함.

또한 附帶建議要綱에는 監獄이라는 名稱의 廢止, 刑名의 單一化, 代用監獄의 改善, 善時制의 採用, 死刑의 廢止 등이 提案되었다.

(2) 監獄法改正調查委員會

刑務協會의 활동과 더불어 司法省도 戰後의 政세변화에 따라 監獄

法改正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1947년 5월10日 監獄法改正調查委員會를 설치하면서 개정작업을 재개하였다.

동 委員會는 동년7.10~8.26간에 22회의 회의를 거쳐 모두 68개 항목에 달하는 「監獄法改正要綱」을 결정하여 司法大臣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의 큰 특색은 監獄法을 行刑法과 未決拘禁法으로 구분하는 외에 少年行刑法을 독립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要綱도 少年行刑에 대하여 14개 항목, 未決拘禁에 대하여도 22항목을 두었다.

이밖에도 주목해야 할 항목으로는 ①監獄法의 人權擁護的·敎化的性格의 강화 ②受刑者의 基本的 遵守事項의 規定化 ③第3者에 대한 武器의 사용 ④刑務作業에 의한 自給自足 ⑤作業報酬請求權 ⑥歸休 ⑦強制醫療 등을 들 수 있다.

事務當局은 「監獄法改正要綱」에 기하여 1947년 10월에서 이듬해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行刑法草案」을 작성하였으며, 이것과는 별도로 1949년 1월에는 成人矯正局 法規係에서 감옥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의도한 「監獄을 개정하는 法律案(矯正施設法案)」이 작성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司法大臣에 대한 監獄法改正調查委員會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事務當局도 나름대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占領軍當局의 관심은 오히려 少年問題나 保護問題였고 刑法全面改正의 논의가 대두된 가운데서 현행 監獄法이 大綱만을 정한 彈力性이 많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개정작업은 다시 중단되었다.

(3) 監獄法改正要綱 假草案

改正作業이 재개된 것은 1952년 4월, 일본에 대한 占領이 해제되면서 부터이다. 1954년 법무성 교정국에 法規室이 설치되었고 이후 同

실을 중심으로 監獄法改正의 준비작업이 이루어졌다.

法規室은 우선 1947년의 「監獄法改正要綱」, 1946년 刑務協會 작성의 「監獄法改正에 관한 建議要綱」, 나아가 1922년의 「行刑制度調査答申者」등 그 때까지 개정작업의 성과를 비롯하여 外國立法例 등을 자료로 하여 「監獄法改正의 諸問題」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局議을 거쳐 「監獄法改正要綱假草案(試案)」으로 되었다.

이 試案은 1957년 3월 省內 關係部局의 심의를 거쳐 「監獄法改正要綱 假草案」이 되었고,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構想案」도 작성되었다. 이 假草案은 모두 28개항목에 달하나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監獄法을 未決拘禁에 관한 것과 行刑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2개의 法體系를 취하는 것으로 함.
- ② 「監獄法」을 「未決拘禁法」과 「行刑法」으로, 「監獄」을 「拘置所」와 「刑務所」로 바꿈.
- ③ 拘禁의 設備 및 在所者의 給養에 있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最低基準을 규정함.
- ④ 警察官署 留置場을 刑務所로 대응하는 것을 금하며 拘置所만으로 대응케 하고 그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함.
- ⑤ 請願制度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조직에 따라 矯正管區長에 대하여 행하는 불복신청과 法務大臣에 대한 불복신청의 두 가지로 하여, 후자는 再申請으로서 전자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게 함.
- ⑥ 未決拘禁所로서의 拘置所를 刑罰拘禁所로서의 行무소에서 독립시켜 그 시설을 분리함.
- ⑦ 未決拘禁者의 自由의 保全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둠.

- ⑧ 未決拘禁者와 변호인의 交通에 있어서는 防禦權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
- ⑨ 收容의 장소인 「懲役監」, 「禁錮監」 및 「拘留場」의 명칭상의 구별을 폐지함.
- ⑩ 人權擁護的·敎化的 精神을 수형자처우의 基調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
- ⑪ 中間處遇制度로서 外出制度를 채택함.
- ⑫ 臨時外出制度를 채택함.
- ⑬ 作業條件의 법률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行무작업에 있어서 勞働保護를 더욱 강화하고 賃金制를 채택함.
- ⑭ 수형자에 대한 懲罰의 종류·절차 등을 적정하게 함.

이상의 假草案 및 構想案은 法務省 局長會議에 제출되었으나 지나치게 理想的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多數意見에 따라 다시 矯正局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4) 刑務所法(假稱)假要綱案

그리하여 1958년 12월 矯正局長을 회장으로 하는 監獄法改正準備會가 법무성 내에 설치되어 前記한 「監獄法改正要綱假草案」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 준비회는 1964년 9월까지 143회의 회의를 거쳐 11월에는 「刑務所法(假稱)假要綱案」 및 「刑務所法(假稱)案理由書」를 작성하였다. 이것을 原案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① 法典은 未決·既決로 나누지 않는다.
- ② 代用監獄은 폐지하지 않고 현행법보다 약간 規制를 강화한다.
- ③ 外部通勤 및 歸休는 時期尙早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職員戒護

下에 행하는 臨時外出은 인정한다.

① 刑務作業의 官用主義와 賃金制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체로 原案보다 保守的 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렸으나 懲罰制度에 있어서 規律違反行爲를 구체적으로 例示하고 懲罰의 종류도 시대의 요청에 맞게 정리하는 등 개선된 점도 볼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6년간에 걸친 감옥법준비회의 勞作도 과거의 諸要綱案이나 構想案과 마찬가지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즉, 1964년 12월에 열린 最終審議會議 結果, 刑法改正作業이 法制審議會에서 진행중이며, 동 심의회에서는 형벌에 관한 根本問題(형벌의 종류, 작업의 부과 등)에 관한 논의가 있고, 그 결론에 따라 감옥법의 내용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刑法改正의 推移를 보아 감옥법 改正作業을 진행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함으로써 그 성과는 또다시 하나의 자료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監獄法改正은 보류되었으나 監獄法施行規則의 개정이 優先務이었으므로 1966년 11월 우선 동 규칙의 일부 개정을 보았다. 이 일부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監獄法規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었으며 開放處遇의 실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5) 刑事施設法案 등

그후 1967년 5월 衆議院法務委員會의 감옥법 개정에 관한 質疑가 개기가 되어 다시 동법 개정작업이 구체화되었다. 동년 7월 監獄法改正準備會가 다시 설치되었고, 동시에 矯正局은 1964년 12월 이후에도 계속해 온 調查研究의 成果를 가지고 22개 항목의 문제점과 이것을 중심으로 한 「刑事施設法案構想-素案」을 準備會에 審議資料로 제출하

였다. 그후 준비회의 審議는 계속되어 1972년 2월에는 刑事施設法 第3次案의 작성을 보게 되었다.

또한 1973년 2월에는 刑事施設法案을 비롯한 과거의 개정작업의 성과를 종합 검토하고, 나아가 法務省으로서 改正監獄法要綱案의 기초 자료를 통합하기 위하여 省內關係者로 구성된 監獄法改正懇談會를 설치하여 法案을 다듬어 나갔다.

(6) 法制審議會 監獄法改正部會

그러던 중 1976년 3월 法務大臣은 法制審議會에 대하여 “監獄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개정의 골자가 될 要綱을 제시하여 주시오”라는 諮問을 구하면서 前記한 監獄法改正懇談會의 토의를 거쳐 작성된 47개 항목에 걸친 「監獄法改正의 構想」과 「構想細目」을 審議의 素材로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法制審議會는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監獄法改正部會를 조직하였는데, 그 구성은 委員이 38명, 幹事가 22명, 계 60명이었으며, 위원의 내역은 行刑關係者 19명, 기타 19명이었다. 이듬 해에는 구체적인 문제의 개별적 검토와 整理案作成을 위하여 小委員會가 설치되었고, 그 구성은 小委員長(平野竜 教授) 아래 학자 3명, 변호사 2명, 판사 1명, 검사 1명, 경찰관 1명, 行刑官 2명으로 이루어졌다.

監獄法改正部會는 前記한 「構想」을 비롯하여 日辯連의 「刑事拘禁法要綱」(1975년 9월) 등을 檢討材料로 삼아 1979년 12월 제47회 회의를 끝으로 일단 部會로서의 심의를 종료하였다. 이 마지막 회의에서 部會는 「監獄法改正의 骨子가 되는 要綱」(계 110개 항목)을 결정, 보고하였다.

(7) 刑事施設法案 등의 國會上程

이 「要綱」을 받은 법무성은 立法技術的인 검토, 關係省廳과의 協議 등을 거쳐 1982년 4월 「刑事施設法案」으로 成案하여 제96회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때 留置施設의 적정한 管理운영을 도모하는 법적 규제를 정한 警察廳 작성의 「留置施設法案」도 함께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日本辯護士連台會는 동년 5월의 총회에서, 刑事施設法案에 대해서는 抜本的修正이 없는 한 廢案留置施設法案에 대해서는 즉각 廢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한 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法務省으로서 是 國會議員로부터의 示唆도 있었고 해서 日辯連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시에 法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은 생각으로 1983년 2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서 日辯連과 의견교환회를 가졌다.

그러나 그사이 1983년 11월 衆議院이 해산됨으로써 法案은 廢案되고 말았다. 解散에 의하여 自動廢案된 法案은 차기국회에 재제출되는 것이 봉례였으나, 法務省은 예정대로 1983년 5월부터 의견교환회를 재개하였다. 그후 상당한 修正을 거쳐 1987년 4월 다시 「刑事施設法案」과 「刑事施設法施行法案」이 警察廳이 제출한 「留置施設法案」과 함께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동년 5월의 國會閉會에 따라 역시 繼續審査로 남겨지고 말았다.

三. 刑事施設法案과 그 修正案의 內容

1. 1982年案

가. 總則

法案은 「刑事施設의 적정한 管理운영을 도모하고 被收容者의 人權

을 존중하며 수용의 성질에 따른 적절한 處遇를 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제1조), 刑事施設이란 懲役, 禁錮 또는 拘留刑의 실행을 위하여 拘置되는 者, 刑事訴訟法(1948)의 규정에 따라 勾留되는 者 및 死刑宣告를 받아 拘置되는 者, 그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刑事施設에 수용되어야 하는 者 등을 收容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처우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2조).

法案은 수형자를 被勾留者, 死刑確定者, 各種 被收容者의 구별하여 定義하고(제3조), 수형자와 다른 被收容者는 별개의 刑事施設 또는 하나의 시설이라도 特別區域을 설정하여 分離收容토록 하였다(제4조).

法案은 또 법률의 시행의 직정을 기하기 위하여 法務大臣의 實地監査(제5조), 형사시설의 장의 意見聽取(제6조), 裁判官 및 檢察官의 視察(제7조), 그리고 學術研究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參觀를 허용(제8조)하는 등의 規定을 두었다.

施設의 長은 收容開始時 피수용자에게 ①종교에 관한 사항 ②書籍 등의 閱覽에 관한 사항 ③遵守事項 ④面會 및 信書의 受發에 관한 사항 ⑤審査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⑥苦情의 申告에 관한 사항 ⑦受刑者 이외의 被收容者에 대하여는 自辯이 가능한 衣類 등의 물품의 사용 취급 등에 관한 사항등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제9조) 被收容者의 識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진촬영, 指紋採取, 기타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조).

被收容者에게는 刑事施設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류 등을 내어 하고 식사 등을 지급하는 원칙을 규정하였으며(제11조), 物品貸與의 기준(제12조)과 自辯物品使用이 가능한 품목을 열거하였다(제13조).

被收容者의 건강과 刑事施設內의 위생을 保持하기 위하여 적절한

건강위생상 또는 醫療上의 조치를 강구토록하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제14조), 운동(제15조), 피수용자의 清潔義務(제16조), 入浴(제17조), 이발과 면도(제18조),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건강진단(제19조), 傳染病豫防措置(제20조), 피수용자의 傷病時 시설의 직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外部醫師의 진료(제21조), 醫療上의 特別處遇(제22조), 入院診療(제23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醫療上의 自辨이라 할 수 있는 指名醫에 의한 진료도 가능하게 하였다.(제24조), 피수용자의 出産時 필요하다면 시설밖의 병원에 一時入院도 가능하게 하였고(제25조) 子女의 養育에 관한 규정도 두었다(제26, 27조).

被收容者의 精神生活의 충실을 위하여는 宗教 및 敎誨(제29, 30조)는 물론 書籍 등의 열람 특히 時勢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時事報道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제6장)을 두었다.

刑事施設의 規律과 秩序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상(제36조) 제7장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의 부여(제37조), 신체검사(제38조), 필요한 경우의 隔離收容(제39조), 피수용자의 危害行爲, 도주, 직원의 業務妨害 기타 필요한 경우의 制止措置(제40조), 捕繩, 手錠, 拘束台 및 防聲具의 사용(제41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 피수용자의 危害行爲, 도주 등의 우려 기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保護室에의 수용(제42조), 武器의 휴대와 사용(제43조)에 관한 상세한 규정도 두었다.

나. 受刑者의 處遇

수형자에 대한 處遇는 收容을 확보하면서 그의 資質 및 環境에 따라 改善更生意慾의 喚起와 사회생활에의 適應能力의 育成을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47조), 수형자의 自主性促進을 위하여 수형자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제한을 이러한 목적달성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점차 완화하고 특히 改善의 가능성이 큰 자는 開放的 시설에서 處遇할 수 있게 하였다(제48조).

矯正處遇의 실시에 있어서는 矯正目的의 달성을 위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專門的 知識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형자의 資質과 環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公務所 또는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게 하였다(제56조).

處遇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處遇要領」에 따라 행하며(제57조), 集團處遇 및 刑事施設外에서의 처우도 가능하게 하였다(제58, 59조).

作業은 원래 懲役刑受刑者에게만 부과하는 것이나 禁錮나 拘留刑受刑者도 그의 희망에 따라 할 수 있게 하였다(제62조) 작업은 수형자의 勤勞意慾을 높이고 職業上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실시하며(제63조), 일정기간을 경과하고 원활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戒護를 부친 外部通動作業도 가능하게 하였다(제65조).

作業에 따른 報獎金을 석방시에 지급하며 作業報獎金額을 정하는 기준은 作業의 종류와 내용, 당해 작업에 요하는 知識과 機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法務大臣이 정하게 하였다(제70조).

社會生活의 기초가 되는 學力을 결한 受刑者 기타의 敎科指導를 필요로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學校敎育法」에 따른 학교교육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의 敎科指導를 하며(제78조), 신체에 障害가 있거나 精神薄弱者인 수형자의 경우 그러한 심신의 상황이 改善更生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治療的 處遇를 행하고(제79조), 경우에 따라서는 體育, 相談助言 기타의 생활지도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제80조).

開放的 施設의 수형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의 無戒護外出(제83조) 및 7일 이내의 無戒護外泊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제84조), 그비용은 自辨을 원칙으로 하나 受刑者가 無資力인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였다(제88조).

刑事訴訟法の 규정에 따라 勾留刑을 받은 受刑者(被勾留受刑者)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게 하였다(제102조).

다. 被勾留者의 處遇

被勾留者의 處遇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勾留된 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도주와 罪證隱滅의 방지 및 그의 防禦權의 존중에 특히 유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제104조).

被勾留者의 居室은 罪證隱滅의 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單獨室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에서의 독서, 학습, 기타 활동에 있어서 시설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제106조).

面會 및 信書의 수발에 있어서 被勾留者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差止 또는 제한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제107조). 그러나 시설의 장은 罪證隱滅의 방지 또는 刑事施設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被勾留者의 辯護人 등과의 면회나 信書의 受發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제108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면회에는 직원이 입회하고(제109조), 일정한 경우에는 面會를 일시정지 내지 중지시킬 수 있게 하였다(제110조).

信書의 내용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前檢査를 받으며(제111조), 暗號의 사용, 罪證隱滅의 試圖 등 일정한 경우에는 發信과 受信의 禁止, 해당 個所의 削除 또는 抹消될 수 있게 하였다(제112조).

라. 死刑確定者의 處遇

死刑確定者의 處遇는 내용을 確保하고 그가 心情의 안정을 인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제115조). 死刑確定者의 居室은 單獨室로 하며, 거실에서의 독서, 학습 기타 활동을 하는데 援助를 받을 수 있다(제116조).

施設의 長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필요하면 民間人篤志家의 협력과 원조를 받아 相談助言, 講話實施 기타 心情의 安定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제117조).

사형확정자에게도 親族, 중대한 利害關係者 등과의 面會 및 信書의 受發이 허용되며(제118조), 면회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였다(제119조).

마. 其他

피수용자는 自辨衣類의 使用不許處分, 指名醫診療의 중지, 宗教上의 행위의 금지나 제한 등 施設의 장의 조치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大臣에 대하여 심사를 書面으로 신청할 수 있고(제140조), 이에 대하여 法務大臣은 裁決로써 却下, 棄却 또는 당해 處分의 취소, 변경 기타의 是正措置를 명하며(제143조), 이를 이유로 施設의 직원은 피수용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아니되도록 하였다(제144조).

피수용자는 그가 받는 處遇에 있어서 苦衷을 구누 또는 서면으로 당해 施設의 장(제146조), 監査官(제147조) 및 法務大臣(제148조) 등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정한 被收容者는 刑事施設 대신 「留置施設法」(未通過)에 규정된 都·道·府·懸의 警察署에 설치된 留置施設에 留置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刑事訴訟法과 그밖의 法令의 적용을 받게 하여(제163조) 이른바 「代用監獄」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모두 5편 166개조로 구성된 死刑施設法案은 기존의 「監獄法施行規則」과 「行刑累進處遇令」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하여 이미 시행해오던 것을 정리한 性格을 띠고 있는데, 그 要點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와 被收容者間의 법률關係를 명확히 하였다(法律化).

둘째, 被收容者의 생활 및 행동을 제한하는 根據와 限界를 분명히 하였다.

셋째, 증대한 權利利益의 제한이 따르는 조치를 執行하는 경우의 절차, 要件 등을 엄격히 하였다.

넷째, 權利救濟制度로서의 審査의 신청을 제도화하고 苦衷의 申告制度도 정비하였다.

2. 日辯連의 批判

前述한 바와 같이 刑事施設法案에 대하여 日辯連은 「日辯連拘禁二法對策本部」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法案의 修正을 요구한 決議에서 정한 方針의 大綱은 다음과 같다.

① 代用監獄의 早期廢止

② 未決과 既決을 명확히 분리하여 防禦權 등 刑事소송법에 정한 未決被拘禁者의 權利行使를 제한하는 규정의 철폐

③ 受刑者의 社會復歸를 위한 自主성과 人間성의 존중

④ 規律秩序와 보안의 偏重을 是正하고 法律에 의한 권리의 명확한 保障을 도모하며 第三者委員會制度를 설치함

⑤ 國連最低基準規則의 존중과 國際人權規約의 준수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項目을 기초로 하여 對策本部는 모두 6편 202개조에 달하는 試案을 발표하였고, 그후에도 法務省과의 意見交換會 등을

통하여 法案의 修正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法案條正의 經過와 內容

法務省은 1983년 2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日辯連과 意見交換會를 가졌는데, 論議된 사항을 참고로 하여 1982년안의 14개 項目을 修正 이틀 1985년 1월과 2월 日辯連에 제시하였다.

그 條正項目은,

① 未決·既決峻別의 명확화

② 收容開始時의 고지사항으로서 「懲罰에 관한 事項」의 추가

③ 醫療上의 特別處置의 요건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곤란한 증대한 障害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를 삭제

④ 刑事施設의 規律秩序維持를 위한 規制措置의 一般的 限界가 동 조치의 전체에 미치는 것의 명확화

⑤ 遵守事項이 被收容者의 地位에 따라 정해진다는 취지의 明定

⑥ 辯護人 등 (辯護人 또는 刑事소송법 39條 1項에 규정된 변호인이 될 자를 말함)이 休代하는 訴訟關係書類의 內容을 檢査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明定

⑦ 女子被收容者의 신체검사는 여자직원이 한다는 취지의 明定

⑧ 拘束台 및 防聲具의 사용에 의사가 관여한다는 취지의 明定

⑨ 保護室收容에 醫師가 관여한다는 취지의 明定

⑩ 受刑者의 自主성의 존중과 希望의 참작의 明定

⑪ 被收容者의 自己勞作의 明定

⑫ 書信의 檢査는 지명된 직원이 행한다는 취지의 明定

⑬ 被拘留者와 辯護人 등과의 接見交通의 제한사유에서 「罪證의 隱滅의 防止上」의 削除 및 制限事由의 明定

⑭ 懲罰事由에서 「暴動을 일으키는 것」의 削除 등이다.

다시 法務省은 1987년 3월과 4월 日辯連과 4회의 회합을 갖고 위의 14개 項目 등에 관한 日辯連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전부터 法案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국회의원과 형사법학자 등의 의견도 청취하였으며, 또한 日辯連과 10회의 意見交換을 한 警察廳과도 협의하여 7개항에 걸친 수정을 가하였다.

그 條正項目은,

- ① 收容開始時의 告知事項의 추가와 문서에 의한 告知의 明定
- ② 外口語書籍 등과 書信의 번역비용 및 外國語에 의한 면회의 통역비용은 피수용자에 부담시키는 것이 相違한 경우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사항의 명확화
- ③ 刑事施設의 規律秩序維持를 위한 規制措置의 일반적 한계가 동 조치의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더욱 명확화 하는 것 및 指定職員의 권한에서 「命令」 「기타의 規制」를 삭제하고 지정직원의 지시가 준수사항을 보완하는 취지의 명확화
- ④ 遵守事項이 被收容者의 지위에 따라 정해진다는 취지의 明定
- ⑤ 着衣 및 携帶品의 檢査對象에서 辯護人 등의 제외
- ⑥ 受刑者의 自主性 존중의 일층 명확화
- ⑦ 被拘留者와 辯護人 등과의 接見에 관하여 辯護人 등으로부터의 정해진 일시장소, 人員數에 의하지 않는 면회의 신청에는 管理運營上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明定 등 7개 항목이다.

四. 맺는 말

일본의 현행 監獄法은 1908년에 제정되어 1922년 行刑制度調査委員

會가 활동을 시작한 아래로 오늘날까지 그 全面改正을 위한 작업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으나 前述한 바와 같은 緣由로 아직 전면개정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부분적인 改正과 例規 등을 통하여 일본의 行刑制度는 國際的인 水準에 도달해 있으며, 行刑法의 전면개정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觀點에 따라서는 새로운 行刑法의 出現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테지만 朝令暮改式의 拙速立法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의 輿論을 수렴해 나가는 민주적이고 신중한 태도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또 改正案의 내용을 보더라도 오늘날 行刑法改正運動의 세계적 경향에 부응하여 受刑者의 인권보장을 위한 法的地位 내지 權利義務關係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社會復歸的 行刑을 실현하기 위한 治療的 處遇와 開放處遇 등 科學化 社會化된 處遇方法을 규정하는 데 注力하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 行刑法의 전면개정 推進經過와 法案의 내용은 1950년에 제정된 이래 몇차례의 部分改正을 거치면서도 時代進運에 반맞추지 못하고 따라서 矯正先進化를 主導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行刑法의 전면개정을 위해 좋은 자극과 資料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